

2016. 4. 13.(수)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언론매체 이용 선거운동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 안내서는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절차·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것입니다.

● 법규명·선거관리위원회명칭 등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 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칙
-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서식 규칙별지서식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 선거구 사무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관할선거구위원회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입후보예정자

● 선거종류별 선거구위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중앙위원회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해당 구·시·군위원회

각종 신고 · 통보 기한 일람표

처 리 사 항	처리과정 (에서→로)	기 한	근 거	비 고
<신문광고>				
○ 인증서교부신청	중앙당⇨중앙위원회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법§69⑤	
<방송광고>				
○ 광고실시 통보	방송사⇨중앙위원회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법§70③ 규칙§35①	
<방송연설>				
○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방송사⇨관할선거구위원회	3. 14.까지	법§71⑤	
○ 방송시설과 일정 결정·통지	선거구위원회⇨중앙당·후보자	3. 21.까지	법§71⑥	
○ 방송연설신고	중앙당·후보자⇨당해 선거구위원회	방송일 전 3일까지	법§71⑩	
<방송시설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 방송실시 시간대 등 통보	방송사⇨선거구위원회	방송일 전 2일까지	법§72③	
<경력방송>				
○ 방송시설통보	한국방송공사⇨중앙위원회	3. 14.까지	규칙§38①	
○ 원고제출	중앙당·후보자⇨관할선거구위원회	3. 25.까지	규칙§38②	
○ 원고송부	중앙, 시·도위원회⇨한국방송공사	3. 28.까지	규칙§38②	
○ 방송일정 통보	한국방송공사⇨중앙, 시·도위원회	방송일정을 결정한 때	규칙§38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원고제공 요청	방송사⇨관할선거구위원회	방송하고자 할 때	규칙§39①	
○ 원고제공	관할선거구위원회⇨방송사	요청 즉시	규칙§39①	
○ 방송일정 통보	방송사⇨관할선거구위원회	방송일 전 2일까지	법§74②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개최통보	방송사⇨관할선거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통보불요)	규칙§45조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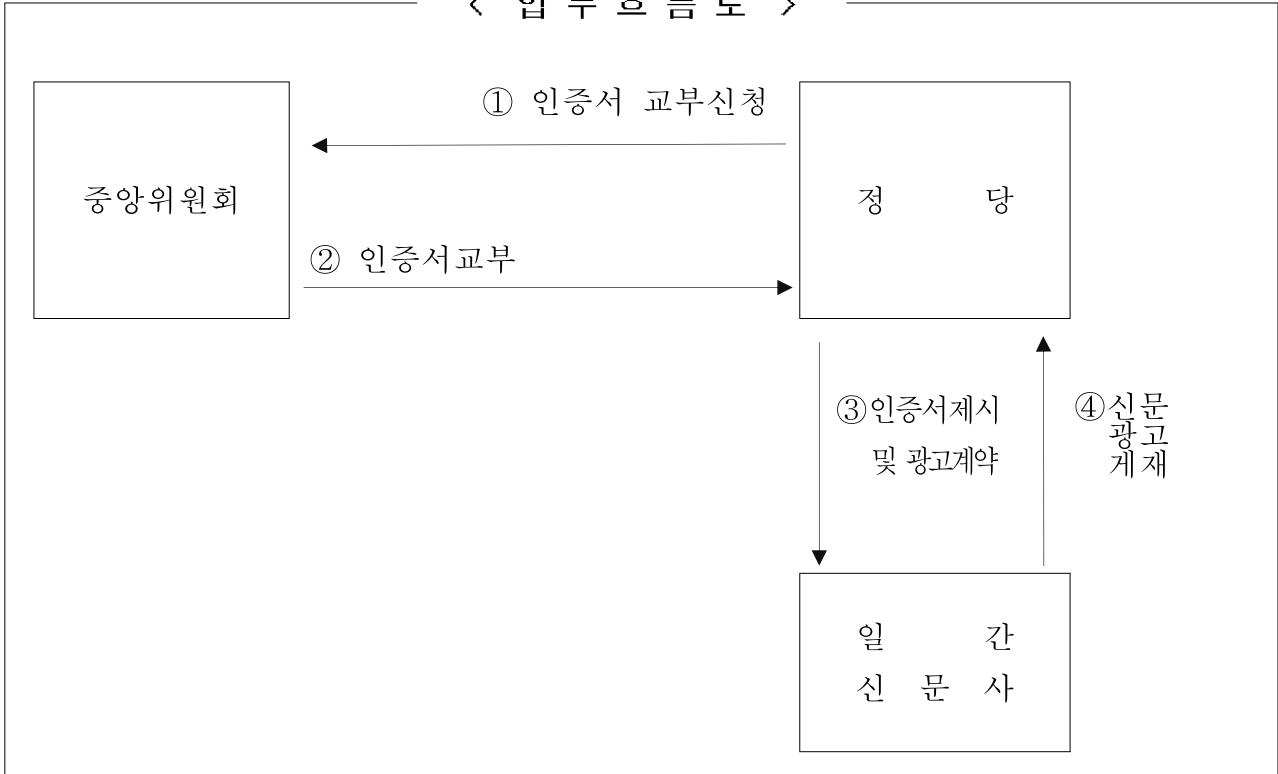
목 차

①	신문 광고	1
②	방송 광고	3
③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5
④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8
⑤	경력 방송	10
⑥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13
⑦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15
□	각종 서식	17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표	29

1

신문광고(법 제69조, 규칙 제34조)

< 업무흐름도 >



㉠ **광고주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신문광고를 할 수 없음.

㉡ **대상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

※ 일간신문이 아닌 주간신문 등에는 신문광고를 할 수 없음.

㉢ **광고가능기간** : 2016. 3. 31. ~ 2016. 4. 11.까지(선거일전 2일까지)

※ 선거일 전일인 2016. 4. 12.에는 신문광고를 할 수 없음.

㉣ **광고횟수 등**

(1) 횟 수 : 총 20회 이내

※ 하나의 일간신문에 1회 광고하는 것을 1회로 보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발행일자가 표시되었더라도 1회로 봄.

(2)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3) 광고근거표시 :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광고근거를 표시하여야 함.

㉮ 광고절차

(1) 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

- 신청자 : 신문광고를 하고자 하는 정당
- 신청처 : 중앙위원회
- 신청시기 : 신문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
- 신청서식 : **붙임 1** (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2) 신문광고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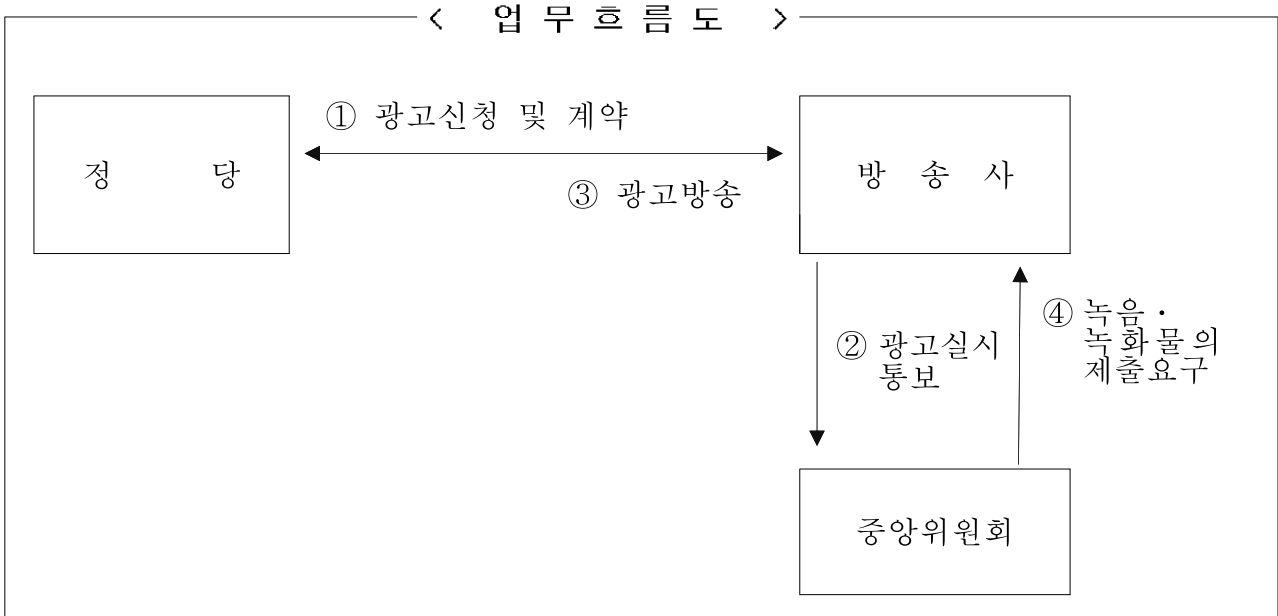
- 계약방법 : 각 정당이 중앙위원회에서 교부한 광고게재인증서를 첨부하여 일간신문사 경영·관리자(광고업무담당자)와 계약
- 계약시기 : 광고일 전일까지
 - ※ 선거기간전에 교부된 정강·정책광고용 광고게재 인증서와 선거기간중에 교부된 선거운동광고용 인증서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문광고 실시기간(2016. 3. 31. ~ 4. 11.까지)에 유의하여 광고계약 체결

㉮ 비용부담 : 해당 정당이 부담

- ※ 선거기간중 같은 지면에 같은 규격으로 게재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정당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2

방송광고(법 제70조, 규칙 제35조)



㉔ **광고주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재·보궐선거의 후보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음.

㉕ **대상 방송시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

㉖ **광고가능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 4. 12.까지)

㉗ **광고시간** : 1회 1분 이내

㉘ **광고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 횟수계산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의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㉙ **광고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㉔ **광고절차** : 방송사는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실시

(1) 동일한 일시에 2이상의 방송광고 신청이 있는 때의 방송일시 조정

- 신청을 받은 순서에 의함.
- 신청순서가 같을 때에는 그 방송시설의 이용횟수(계약이 이루어진 횟수 포함)가 적은 신청인의 순서에 의함
- 신청순서와 이용횟수가 같을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추천으로 결정

(2) 계약방법 : 정당과 방송사간에 개별계약

(3) 방송광고실시 통보

- 통 보 자 : 방송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
- 통 보 처 : 중앙위원회
- 통보시기 : 방송광고 방송·방영일 전일까지
- 통보서식 : **붙임 3** (방송광고 실시통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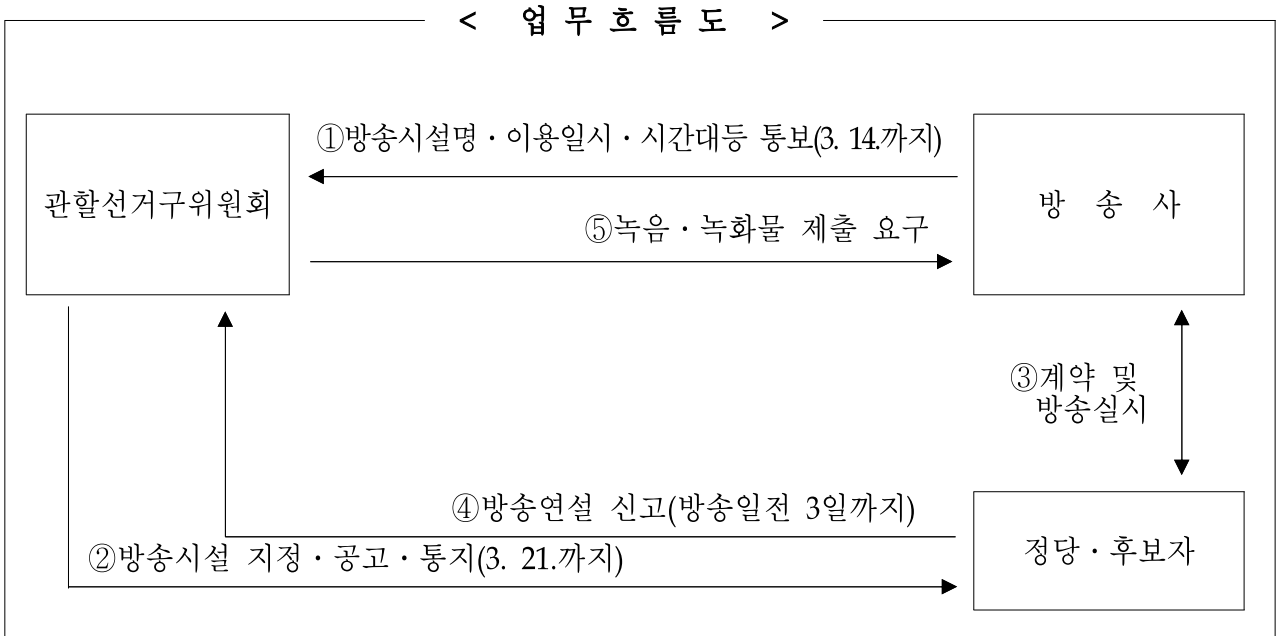
㉕ **비용부담** : 해당 정당이 부담

※ 선거기간 중 같은 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정당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㉖ **녹음·녹화물 제출** : 중앙위원회로부터 제출요구가 있는 때

3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법 제71조, 규칙 제36조)



㉔ **실시주체**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구·시·군의장 재·보궐선거 후보자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㉕ 대상 방송시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포함)]

※ 2016. 3. 21(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대상 방송시설과 일정을 선거구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광고하고, 광고즉시 정당에 통지하고 후보자등록 시 후보자에게 통지

㉖ **가능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 4. 12.까지)

㉗ **연설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㉘ **연설시간** : 1회 10분 이내

바 연 설 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장 재·보궐선거 : 후보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에서 비례대표후보자 중 선임한 대표 2인

자 연설횟수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구·시·군의장 재·보궐선거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연설자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1회 이내

※ 연설횟수 계산에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아 방송연설절차

(1) 방송시설의 시간대 등 통보

- 통 보 자 : 방송시설 경영 또는 관리자
- 통 보 처
 - 서울지역 방송사 : 중앙위원회
 - 서울지역외 방송사 : 해당 시·도위원회
- 통보기한 : 2016. 3. 14.(선거일전 30일)까지
- 통보내용 :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 · 이용일시 · 시간대
- 통보서식 : **붙임 4** (후보자가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서)
 - ※ 기한 내 통보가 없는 경우 방송연설 대상에서 제외됨.

(2) 방송연설에 이용할 방송시설 지정 · 공고 · 통지

- 지 정 자 : 관할선거구위원회
- 지정 · 공고(통지)시기 : 2016. 3. 21.(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 내 용 : 방송연설에 이용할 방송시설과 일정
- 통 지 : 정당 · 후보자(후보자등록 시)

(3) 방송연설신고

- 신고자 :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비례대표후보자)
- 신고시기 : 방송일전 3일까지
- 신고처 : 당해 선거구위원회
- 신고내용 : 방송시설명, 이용일시, 소요시간, 이용방법 등
 -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첨부
- 신고서식 : **붙임 5**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4) 방송연설실시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에 협조하여야 하며, 방송시간대와 방송권역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텔레비전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녹화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중계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정당·후보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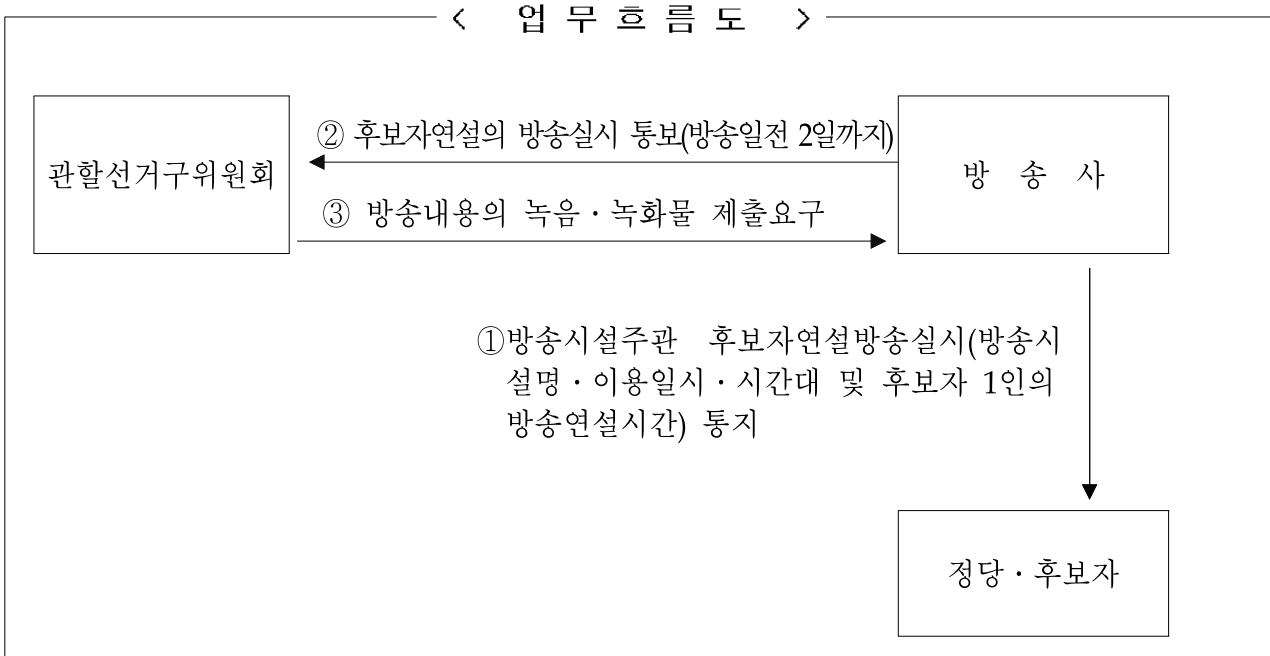
☒ 비용부담 :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

- ※ 선거기간 중 같은 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음.

☒ 녹음·녹화물 제출 :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제출요구가 있는 때

4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법 제72조, 규칙 제37조)



㉞ **방송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시설이라 함은 법 제70조(방송광고)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함

㉞ **방송대상** : 후보자의 연설

※ 후보자외의 자는 연설을 할 수 없음.

㉞ **방송가능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 ~ 4. 12.)

㉞ **연설내용** :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㉞ **방송절차**

(1) 방송실시 통지

○ 통지자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 통지대상 : 후보자(비례대표후보자의 경우 추천정당)

- 통지시기 : 후보자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 통지내용 :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와 후보자 1인의 연설시간

(2) 방송일시 등 통보

- 통 보 자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 통 보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통보내용 : 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등
- 통보시기 : 후보자연설의 방송일전 2일까지
- 통보서식 : **붙임 6** (후보자연설의 방송실시 통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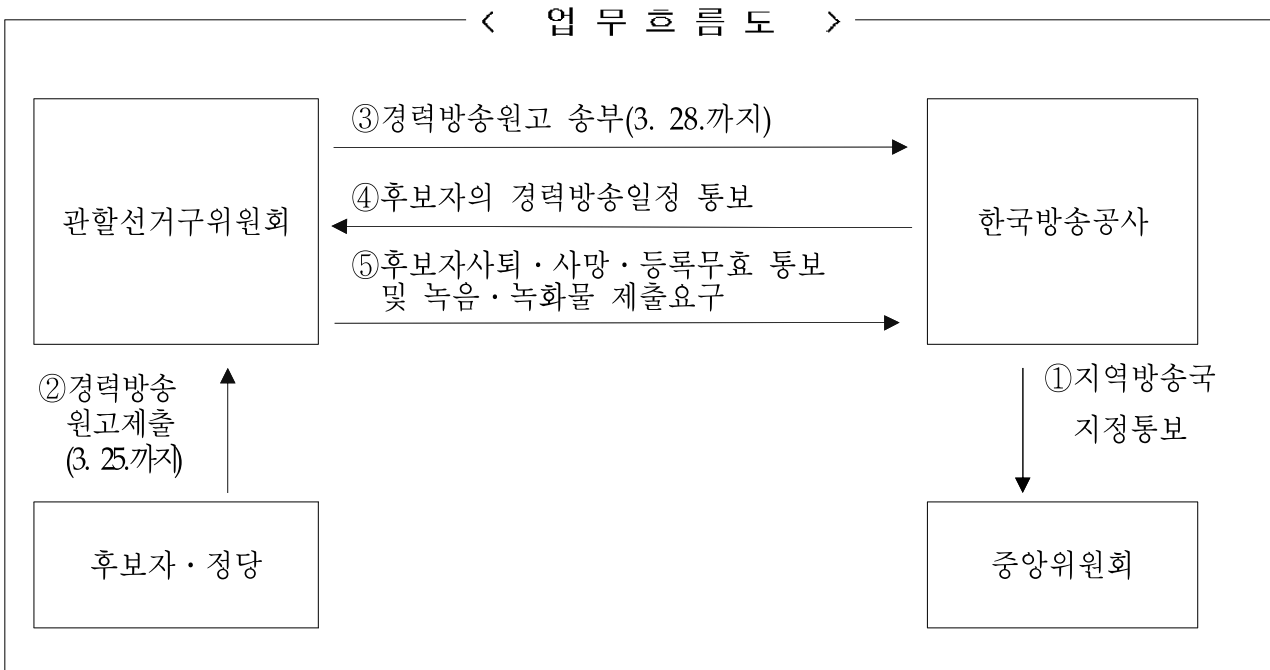
(3) 방송실시

- 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 하여야 하며, 연설시간 배정 등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간에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단, 후보자가 연설을 포기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중계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방송사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비용부담 : 해당 방송사가 부담

※ 후보자연설의 방송비용을 후보자 또는 정당(비례대표후보자의 경우)에게 부담 시켜서는 아니됨.

㉯ 녹음·녹화물 제출 :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제출요구가 있는 때



㉠ **방송주체** : 한국방송공사(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한국방송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이용한 경력방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구단위로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지정하여 선거일전 30일(2016. 3. 14)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통보서식 : 붙임 7)

㉡ **방송대상**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송부하는 국회의원 및 구·시·군의장 선거 후보자의 경력

㉢ **방송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 ~ 4. 12.)

㉣ **방송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이상

㉤ **방송시간** : 후보자마다 매회 2분이내

㉥ **방송내용** :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함) 및 직업 기타 주요경력

㉔ 방 법

- 선거구단위로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공한 후보자의 경력방송원고를 한국방송공사가 수정·부가하여 방송할 수 없음.
-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경력방송을 중계 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㉕ 방송절차

(1) 방송원고제출

- 제 출 자 : 후보자 또는 정당(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 제 출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제출기한 : 2016. 3. 25.(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제출수량 :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용 각 2부
- 원고작성
 - 100자(구두점 기타 문장부호도 자수로 산입) 이내 작성
 - ※ 직업 및 경력은 1개, 경력은 2개 이내로 하되 각 12자 이내로 작성
 - 사진(5×7cm)은 천연색으로 최근 3개월 이내 탈모상반신으로 촬영된 후보자만의 사진이어야 함.
 - ※ 디지털 사진파일 1개 별도 제출
 - 원고의 자수가 넘거나 사진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넘은 부분과 사진은 방송(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방송원고 송부

- 송 부 자 : 관할선거구위원회(또는 중앙 및 시·도위원회)
- 송 부 처 : 한국방송공사
- 송부시기 : 2016. 3. 28.(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송부수량 : 후보자(정당)의 기호순으로 텔레비전용과 라디오용으로 구분하여 후보자별로 각 1부씩 송부

(3) 경력방송일정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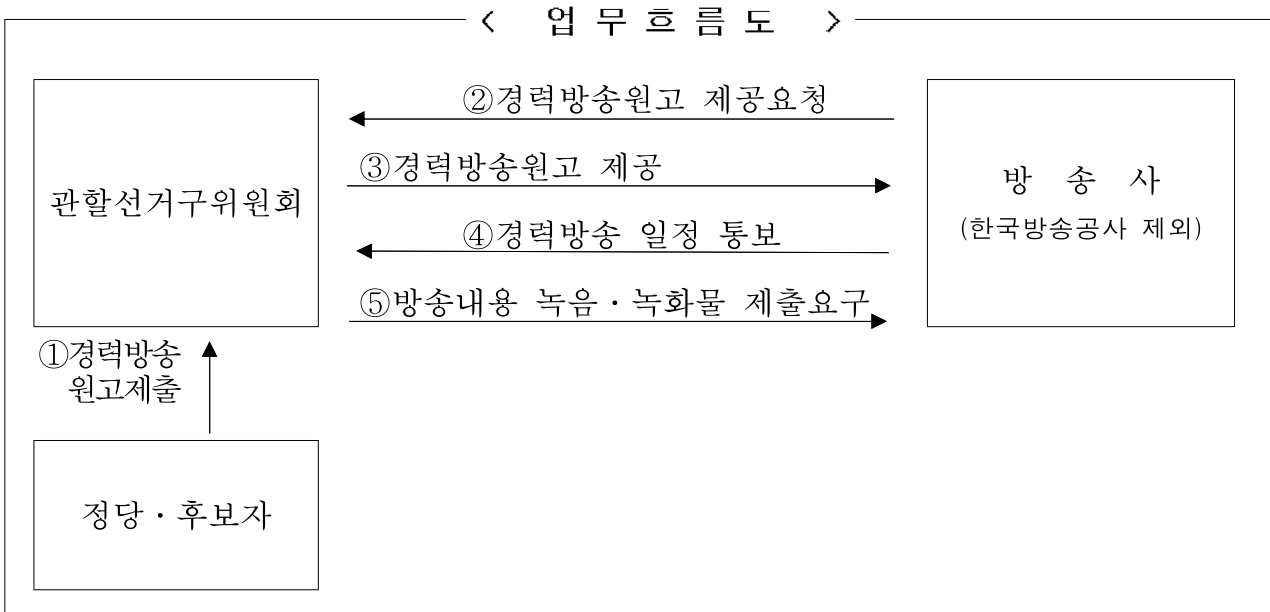
- 통 보 자 : 한국방송공사
- 통보대상 : 관할선거구위원회
- 통보시기 : 경력방송의 일정을 결정한 때
- 통보서식 : **붙임 8**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 녹음·녹화물 제출 :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제출요구가 있는 때

6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법 제74조, 규칙 제39조)



㉔ **방송주체** :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포함)]

㉕ **방송대상**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공하는 국회의원 및 구·시·군의장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경력

㉖ **방송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 ~ 4. 12.)

원고요청 및 제공

(1) 원고요청 : 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요청

※ 후보자로부터 사진 등을 제출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조기(2016. 3. 22. 까지)에 요청

(2) 원고제공 :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위 “(1)”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경력방송원고를 지체없이 제공

㉞ 경력방송일정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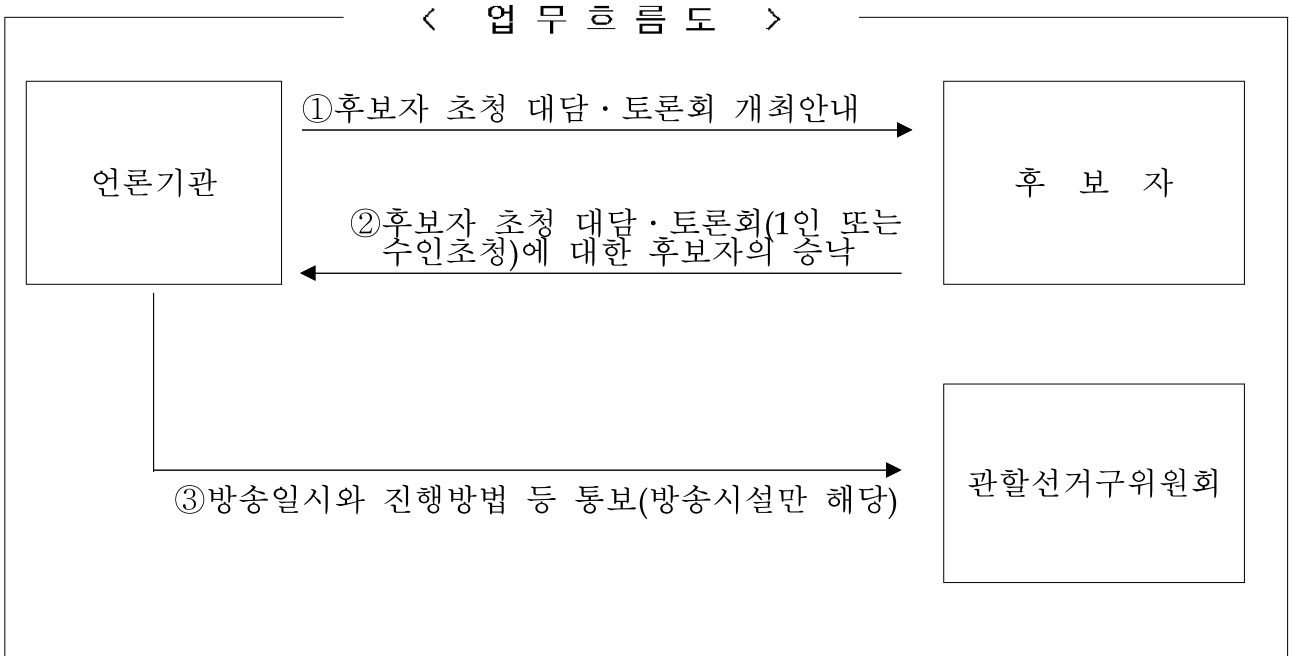
- (1) 주 체 : 경력방송을 실시하는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 (2) 통 보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3) 통보기한 : 방송일전 2일까지
- (4) 통보내용 :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방송시설명·방송일시·소요시간)
- (5) 통보서식 : **붙임 9**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서)

㉟ 경력방송 실시방법

-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하되 선거구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음.
 - ※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중계방송하는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함.

㊱ 비용부담 : 당해 방송사 부담

㊲ 녹음·녹화를 제출 :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제출요구가 있는 때



㉠ 개최주체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포함)]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 초청대상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선거기간개시일 전에는 입후보예정자)

㉔ 개최시기

- 입후보예정자 초청 대담·토론회 : 2016. 2. 13. ~ 3. 30.(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2016. 3. 31. ~ 4. 12.(선거운동기간 중)

㉕ 개최방법 :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개최

※ 특정 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됨.

㉖ 개최통보

- 대 상 : 방송시설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 통 보 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통 보 처 : 관할선거구위원회
- 통보시기 : 대담·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
- 통보서식 : **붙임 10** (대담·토론회 개최 통보서)

㉗ 토론자에게 진행절차와 방법 등 통보

- (1) 대담·토론회에 참가하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별로 주제발표 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 (2)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 (3) 사회자의 선정방법 기타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방법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시에는 신문지면·화면 및 녹음구성이 토론자 간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㉘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

※ 개최비용을 정당·후보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㉙ 녹음·녹화물 제출 : 관할선거구위원회로부터 제출요구가 있는 때

각종 신고·통보서식

1. 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2. 광고게재의 인증
3. 방송광고 실시통보서
4. 후보자가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서
5.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6. 후보자연설의 방송실시 통보서
7.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의 지정통보서
8.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서
(한국방송공사)
9.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서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
10. 대담·토론회 개최 통보서

【붙임 1】

[별지 제18호의3서식]

광고게재인증서의 교부신청서

교부신청수량	비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신문광고게재
인증서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자

당인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 2】

[별지 제20호서식의(나)]

인 증 제 호

광 고 계 재 의 인 증

정당명 :

위의 정당은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 1매로 1일간신문에 1회의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붙임 3】

[별지 제21호서식]

○ ○ 방 송 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방송광고 실시통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방송사가 실시하는 방송광고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광 고 주	방 송 시 설 명	광고일시 (부터~까지)	광고내용 요 지	비 고

덧붙임 : 방송광고계약서사본 부.

○ ○ 방송사의 장 인

- 주 : 1. “광고주”란은 광고를 의뢰한 정당명을 기재합니다.
- 2. “방송시설명”란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구분하고 주파수 또는 채널을 기재합니다.
- 3. “광고일시”란은 분·초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4】

[별지 제22호서식의(가)]

○ ○ 방 송 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후보자가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이용할 방송시설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텔레비전 방송 시설				라디오 방송 시설			
시설명	일 자	시 간 (부터~까지)	이 용 요 금	시설명	일 자	시 간 (부터~까지)	이 용 요 금

○ ○ 방송사의 장 인

주: “이용요금”란에는 1회 10분당 이용요금을 기재하되, 이용요금은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붙임 5】

[별지 제22호서식의(라)]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연 설 자			방 송 시 설 구 분	방 송 시 설 명	이 용 일 시 (부 터 ~ 까 지)	소 요 시 간	비 고
성 명	명 부 순 위	주 소 (전 화)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1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덧붙임 :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 부

신청인

대표자

당 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1. “이용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연설자”란을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3. “비고”란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으로 기재합니다.

【붙임 6】

[별지 제23호서식]

○ ○ 방 송 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후보자연설의 방송실시 통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선거구)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방송시설구분	방송시설명	후보자성명	방송일시 (부터~까지)	소요시간	비 고
텔레비전					
라 디 오					

○ ○ 방송사의 장 인

주:1. "(○○선거구)"란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성명"을 "정당명 및 후보자성명"으로 고쳐 기재하여야 합니다

3. "방송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비고"란에는 방송·방영권역을 기재합니다.

【붙임 7】

[별지 제24호서식의(가)]

한국방송공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의 지정통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7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지역방송국명	구분	경력방송을 행할 선거구명	비고
	텔레비전		
	라디오		
	텔레비전		
	라디오		

한국방송공사사장 인

【붙임 8】

[별지 제24호서식의(다)]

한 국 방 송 공 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 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선거구명	방송시설명	방송일시	소요시간	비 고

한국방송공사사장 인

주 : 1. "방송시설명"란은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방송시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방송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9】

[별지 제24호서식의(다)]

○ ○ 방 송 사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제 목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선거구명	방송시설명	방송일시	소요시간	비 고

○ ○ 방송사의 장 인

주 : 1. "방송시설명"란은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방송시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방송일시"란은 분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 10】

[별지 제31호의2서식]

대담·토론회 개최 통보서

1. 개최·방송일시

가. 개최장소

나.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다. 방송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라. 방송방법

마. 중계방송사

2. 대담·토론의 주제 및 사회자·진행절차

가. 주 제

나. 참가후보자

다. 참가후보자 선정기준

라. 사회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주 소	전 화 번 호

마. 진행절차 및 방법(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함)

3. 질문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송하고자 「공직선거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덧붙임 : 대담·토론회 개최계획 부(필요시 덧붙임).

2016년 월 일
○○방송사 의 장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2016. 4. 13.(수) 실시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15. 10. 16부터 '16. 5. 13까지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15. 11. 15부터 '16. 2. 13까지	일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5, 6 규\$136의4, 5
11. 15까지	일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2. 5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12. 15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16. 1. 14까지	목	각급선거위 위원 향도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4(월))까지	법\$60② 법\$53①②
1. 14부터 4. 13까지	목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3부터 4. 13까지	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4부터 3. 4까지	수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4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22부터 3. 26까지	화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법\$65⑤
3. 24부터 3. 25까지	목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30부터 4. 4까지	수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 이내	법\$218의17①⑦, 규\$136의15
3.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4.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 첩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5⑥, 규\$30⑤ 법\$64②, 규\$29②⑤
4.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4. 3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일전 10일까지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법\$65⑥, 153①, 규\$76
3. 31부터 4. 12까지	목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4. 5부터 4. 8까지	화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8부터 4. 9까지	금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3	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법 제10장 법 제11장
4.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① 단법\$161 규\$51의3①
6.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 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